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7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동구의 신규 점·사용자가 부담하는 점용료, 사용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및 관리비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공동구의 기존 점용자와 신규 점·사용자 간의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사용료" 등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1) 점용료: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 2) 사용료: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5년 이내로 일시 점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 나.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1) 점용료 산출의 기초자료인 공동구 설치비용의 현재가치를 '생산자 물가지수'와 '시설물감각상각률'을 통하여 산정
 - 2) 사용료의 산출 기초를 기존 '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에서 '점용료'로 변경
- 다. 관리비 부과대상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공동구를 일시점용하는 자'를 명시(안 제6조)

- 라. 「지방자치법」 규정을 반영하여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변경(안 제8조)
- 마.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8. 11. 8. ~ 11. 28.)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 2.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영구점용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 3.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 이내의 점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 4. "관리비"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축, 유지, 재해 복구, 조명, 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시설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로,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를 "점용·사용하고자"로, "별지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 서식의"로, "점용 또는 사용예정일"을 "점용·사용 예정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할수 있다"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동구를 신규 점용·사용하는 자는 점 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점용료는 해당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서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용예정면적 비율(이하 "점용예정면적 비율"이라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한다.
- ③ 제2항 본문의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도 별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와 「시설물감가상각률」을 각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 2.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공종(통로암거 등)의 현재가격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사용료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를 총 점용연수 (점용·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로 나누어 매년 부과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신규 점용·사용에 따라 점용예정면적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의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라 정하되, 여유 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 대하여는 신규 점용·사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존 점용면적에서 감하여 산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신규 점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은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기존의 공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로 충당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동구 점용자(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공동구를 일시점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동구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비 부담의무자에게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 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5조에 따른 점용료"를 "점용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동구 점용예정자"를 "점용료 납부자"로, "일시에 납부하기"를 "점용료의 일시납부"로, "연6퍼센트의"를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으로,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과받은"을 "부과 받은"으로, "60일"을 "90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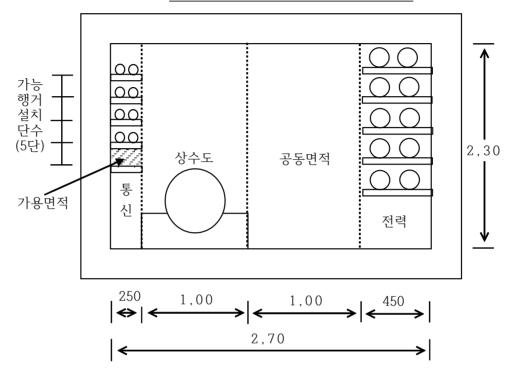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허가를 신청한 공동구 점용·사용부터 적용한다.
 - ②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공동구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 (제5조제5항 관련)

1. 공동구가 1련인 경우 (통신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다위 · m²)

								(단·	커 : m)
①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②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3.91	3.91	2.30	2.30	6.21	6.21	100.0	100.0	
상수도	2.30	2.30	1.35	1.35	3.65	3.65	58.8	58.8	
통 신	0.58	0.46	0.34	0.27	0.92	0.73	14.8	11.8	
전 력	1.03	1.03	0.61	0.61	1.64	1.64	26.4	26.4	
신규점용자	-	0.12	-	0.07	-	0.19	-	3.0	

(점용예정면적 비율 변경 조건 예시)

○ 통신구 조건

- 통신구 행거설치 가능 단수 : 5단

- 통신구 현재 행거사용 단수 : 4단

- 통신구 가용 단수 : 1단

○ 신규젂용자 조건

- 통신구 가용 단수 신규점용 : 1단

※ 신규 점용자가 가용단수(1단) 전체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가용단수 1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용단수 1단에 제2, 제3의 수용가능한 여러 신규 점용의 경우는 가용단수 1단의 범위내에서 수용기관별로 균등배분하여 점용면적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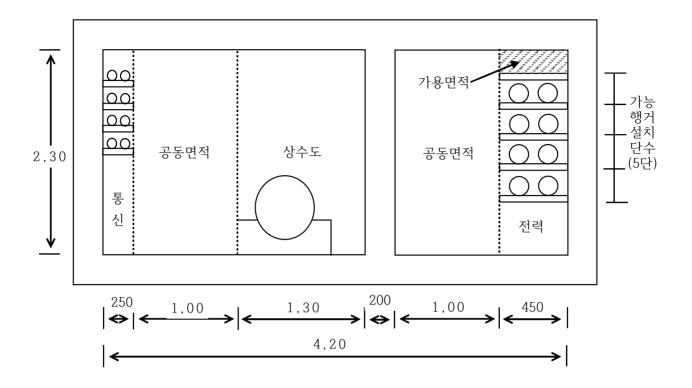
○ 전용면적 재산정 예시

- 통신구 전용면적 (0.58㎡) × 4/5 = 0.46㎡
- 신규점용자 전용면적 (0.58㎡) × 1/5 = 0.12㎡

○ 공동면적 재산정 예시

- 상수도, 통신, 전력, 신규점용자 공동면적 2.3㎡ × 전용면적 재산정비율 ※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의 부담면적을 축소조정

2. 공동구가 2련인 경우 (전력구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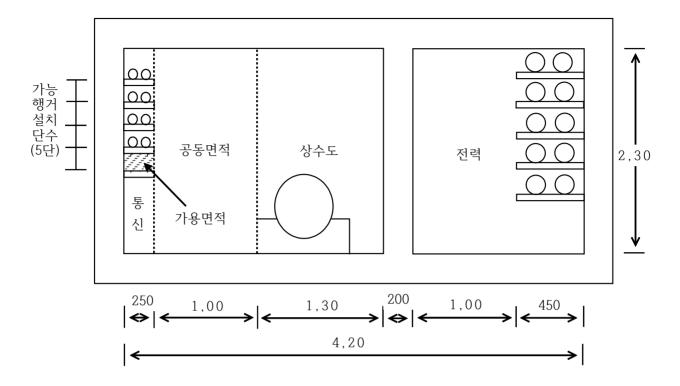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m²)

								, ,	<u>- 11 • 111)</u>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비고
l 屯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미꾸
계	6.90	4.60	2.30	4.60	9.20	9.20	100	100	
상수도	2.99	2.99	1.93	1.93	4.92	4.92	53.5	53.5	
통 신	0.57	0.57	0.37	0.37	0.94	0.94	10.2	10.2	
전 력	3.34	0.83	-	1.84	3.34	2.67	36.3	29.0	
신규점용자	-	0.21	-	0.46	-	0.67	-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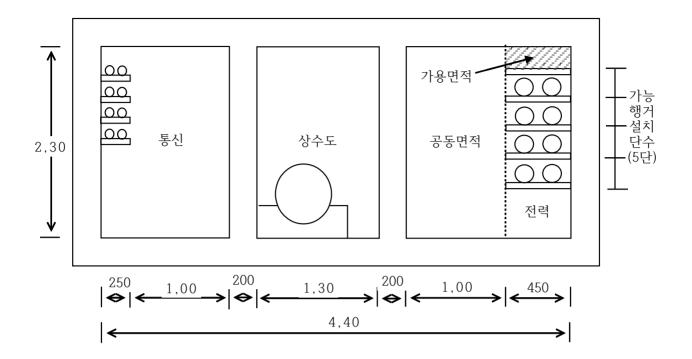
3. 공동구가 2련인 경우 (통신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m²)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구 분 비고 당초 당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 변경 계 6.90 6.90 2.30 2.30 9.20 9.20 100 100 상수도 2.99 2.99 1.93 1.93 4.92 4.92 53.5 53.5 통 신 0.57 0.46 0.37 0.30 0.94 0.76 10.2 8.2 전 력 3.34 36.3 3.34 3.34 3.34 36.3 신규점용자 0.11 0.07 0.18 2.0

4. 공동구가 3련인 경우 (전력구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m²)

									- 11 • 111/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ul =
구 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비고
계	9.20	6.90	-	2.30	9.20	9.20	100.0	100.0	
상수도	2.99	2.99	-	-	2.99	2.99	32.5	32.5	
통 신	2.87	2.87	-	-	2.87	2.87	31.2	31.2	
전 력	3.34	0.83	-	1.84	3.34	2.67	33.4	29.0	
신규점용자	-	0.21	-	0.46	-	0.67	-	7.3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 \times 2.3) \times 4/5 + (1.0 \times 2.3) \times (0.83/1.04) = 2.67$$
(㎡) = $2.67 \div 9.2 = 29.0$ (%)

전용면적 공동면적

	공동구 점	용(사용) 허가 신	!청서(제42	조제1항 관련)	1	
공동구명						
위 치						
기 간						
목 적						
개 요						
점용(사용)	대표자			전화번호		
기 관	주 소					
위와 같이 서	울특별시공동구점용.	로등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기를 신청힘	남나.
			20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점용(첨부서류 2. 평면5 첨부서류 3. 단면5 첨부서류 4. 점용(<u> </u>					

혀 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 하다.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 동구를 말한다.

- 2.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 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 3.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 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 동구를 일시점용(5년 이내의 점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 4. "관리비"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 등에 소 요되는 비용, 기타시설비 및 인 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 다.

제4조(점용허가 등) ① 국토의 계 제4조(점용허가 등) ① 공동구의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9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허</u>가할 수 있다.

하다.

제5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제4조 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 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당해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점용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이

<u>설치비용을</u>	부담하지	아니한 자
	- – – – – – -	
		<u>점용·</u>
사용하고자		별지 제1호
<u>서식의</u>		
<u>주</u>	ige·사용	예정일

정

아

개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9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제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동구를 신규 점용·사용하는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해당 공동 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서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용예정 면적 비율(이하 "점용예정면적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구의 설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때에 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다.

③영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 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 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 는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지 10을 가산 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여야 한 다.

④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이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보며 최소 사용면적은 900제곱센치미터로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의 월사용료 :[사용면적×인근 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10퍼센트]/12 개 정 안

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 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 는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

- ③ 제2항 본문의 공동구의 설치 에 소요된 총비용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도별 생산자물가지수(총지 수)」와 「시설물감가상각률」을 각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한다.
- 2.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공종(통로암거 등)의 현재가격을 추정하여 적 용한다.

④ 제1항의 사용료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를 총 점용연수 (점용·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로 나누어 매년 부과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의 월사용료 : [사용면적×인근 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20퍼센트]/12

<신 설>

<신 설>

제6조(관리비) ①공동구를 점용한 제6조(관리비) ① 공동구 점용자 자는 당해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다.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부담 하여야 한다.

⑤ 신규 점용·사용에 따라 점용 예정면적을 재산정하는 경우에 는 시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의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 라 정하되, 여유 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 대하여는 신규 점용. 사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존 점 용면적에서 감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규 점용·사용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및 사용 료의 100분의 50은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기존의 공 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로 충당한 다.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공동구를 일시점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동구의 관리비를 부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는 당해 공동 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비총액에 대한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총 소요비용에서 사용료 를 공제한 금액을 관리비총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비 부담의무자에게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부과·징수) ① (생 략)

②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거나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 ④ (생 략)

제7조(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료
<u>점용료 납부자</u> -
<u>점</u>
<u>용료의 일시납부</u>
<u>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u>
<u>5년 이내</u>
③ <u>사용료</u>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이의시청) ①

혀 행

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9조(준용) <u>이 조례에서 규정하지</u> <u>아니 한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u> <u>·관리비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u> <u>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u> <u>요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규</u> <u>정을 준용한다.</u>

개 정 안

----- <u>90일</u> -----

②~④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이의신 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공동구의 신규 점·사용자가 부담하는 점용료, 사용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및 관리비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공동구의 기존 점용자와 신규 점·사용자 간의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 도로시설과 전성민(2133-1667)